

2004. 6. 28 (월) 15:00
제86회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03회계연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(전문위원 제중봉)

2003회계연도세입·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

(의안번호 제16호, 2004. 6. 7 사천시장제출)

□ 주 문

- 2003회계연도세입·세출결산승인
 - 일반회계
 - 특별회계
 - 공기업특별회계(상수도)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,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,2,3항,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2003회계연도세입·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함.

□ 주요골자

[세입·세출결산]

- 세입세출결산 총괄
 - 세입결산액 : 431,749,145천원
 - 세출결산액 : 264,357,884천원
 - 세계잉여금 : 167,391,261천원

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38,804,69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,586,565천원임

[회계별 결산내역]

- 일반회계
 - 세입결산액 : 402,234,852천원
 - 세출결산액 : 249,002,237천원
 - 세계잉여금 : 153,232,615천원

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35,769,01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,463,602천원임.
- 특별회계(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)
 - 세입결산액 : 29,514,293천원
 - 세출결산액 : 15,355,647천원
 - 세계잉여금 : 14,158,646천원

이중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3,035,68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,122,963천원임.
- 공기업특별회계(상수도사업)
 - 세입결산액 : 17,011,600천원

- 세출결산액 : 11,209,986천원
- 세계잉여금 : 5,801,614천원

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,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,727,122 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,074,429천원임

<기타사항>

- 2003회계연도 결산서
- 200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
- 2003회계연도 사천시 결산검사 의견서

[세입·세출결산총괄]

○ 일반회계+ 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세 입 결산액 (가) | 세 출 결산액 (나) | 세 계 잉여금 (가-나) | 잉여금 내역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| 명시이월 | 사고이월 | 계속비 이 월 | 보조금 잔액반납 이 월 | 순세계 잉여금 |
| 계 | 431,749 | 264,357 | 167,392 | 107,001 | 5,838 | 24,439 | 1,527 | 28,587 |
| 일반회계 | 402,235 | 249,002 | 153,233 | 104,913 | 5,822 | 23,507 | 1,527 | 17,464 |
| 특별회계 | 29,514 | 15,355 | 14,159 | 2,088 | 16 | 932 | | 11,123 |

○ 일반회계 세입총괄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징수결정액 (가) | 수납액(나) | 미수납액 (다=가-나) | 수납비율(%) (나/가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전 년 도 | 310,957,599 | 311,371,895 | 305,819,237 | 5,552,658 | 98.2 |
| 계(당해연도) | 408,379,120 | 408,157,581 | 402,234,852 | 5,922,729 | 98.5 |
| 지방세 수입 | 21,550,100 | 25,121,189 | 22,285,720 | 2,835,469 | 88.7 |
| 세 외 수 입 | 133,808,050 | 137,863,202 | 134,775,942 | 3,087,260 | 97.7 |
| 지방 교부세 | 106,673,475 | 83,980,700 | 83,980,700 | | 100 |
| 증액 교부금 | | 24,141,214 | 24,141,214 | | 100 |
| 지방 양여금 | 18,989,144 | 17,601,363 | 17,601,363 | | 100 |
|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| 6,672,197 | 6,712,367 | 6,712,367 | | 100 |
| 보 조 금 | 112,686,154 | 112,737,546 | 112,737,546 | | 100 |
| 지방채 | 8,000,000 | | | | |

○ 일반회계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가) | 지출액 (나) | 이월액 (나) | 집행잔액 (가-나-다) | 지출비율(% (나/가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전 년 도 | 310,957,599 | 189,197,825 | 107,231,374 | 14,528,400 | 60.8 |
| 당해연도(계) | 408,379,120 | 249,002,237 | 145,808,418 | 13,568,465 | 60.9 |
| 일반 행정비 | 66,163,355 | 51,578,883 | 12,395,167 | 2,189,305 | 77.9 |
| 사회 개발비 | 108,175,416 | 73,980,644 | 31,910,994 | 2,283,778 | 68.3 |
| 경제 개발비 | 226,702,063 | 121,021,355 | 101,502,257 | 4,178,451 | 53.3 |
| 민 방 위 비 | 249,275 | 231,165 | | 18,110 | 92.7 |
| 지원및기타 경 비 | 7,089,011 | 2,190,190 | | 4,898,821 | 30.8 |

○ 특별회계 세입총괄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가) | 징 수 결정액(나) | 수납액 (다) | 미수납액 (다-나) | 수납비율 (%) (다/가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전 년 도 | 29,371,532 | 31,572,422 | 30,857,648 | 714,774 | 97.7 |
| 당 해 연 도 | 28,118,870 | 30,294,383 | 29,514,293 | 780,090 | 97.4 |
| 공 상 수 도 사 업 | 15,996,989 | 17,198,704 | 17,011,601 | 187,103 | 98.9 |
| 하 수 도 사 업 | 1,884,650 | 2,985,221 | 2,721,352 | 263,869 | 91.1 |
| 주 택 사 업 | 451,410 | 485,561 | 435,650 | 49,911 | 89.7 |
| 새 마 을 소 득 영 사 업 운 | 404,794 | 431,364 | 404,356 | 27,008 | 93.7 |
| 의 료 보 호 성 기 금 조 | 759,033 | 755,211 | 753,821 | 1,390 | 99.8 |
| 저 소 특 주 민 생 활 안 정 사 업 | 580,302 | 611,606 | 583,089 | 28,517 | 95.3 |
|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| 2,263,481 | 2,624,554 | 2,407,594 | 216,960 | 91.7 |
| 농 조 공 지 구 성 사 업 | 1,847,522 | 1,892,462 | 1,887,130 | 5,332 | 99.7 |
| 중 소 기 업 성 기 금 조 | 2,094,483 | 2,093,815 | 2,093,815 | | 100 |
| 화 력 발전소 주변 지 역 지원 사 업 | 1,308,274 | 1,213,233 | 1,213,233 | | 100 |
| 수 질 개 선 사 업 | 527,932 | 2,652 | 2,652 | | 100 |

○ 특별회계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(가) | 지출액 (나) | 이월액 (다) | 집행잔액 (가-나-다) | 지출비율(%) (나/가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전 년 도 | 29,371,532 | 19,647,696 | 1,108,869 | 8,614,967 | 66.8 |
| 당 해 연 도 | 28,118,870 | 15,355,647 | 3,560,962 | 9,202,261 | 54.6 |
| 공 기 업 상 수 도 사 업 | 15,996,989 | 11,209,986 | 2,727,122 | 2,059,881 | 70.0 |
| 하 수 도 사 업 | 1,884,650 | 1,553,913 | 198,560 | 132,177 | 82.4 |
| 주 택 사 업 | 451,410 | 184,738 | | 266,672 | 40.9 |
| 새마을 소득 사업 운 영 관 리 | 404,794 | 250,000 | | 154,794 | 61.7 |
| 의 료 보 호 기 금 | 759,033 | 753,821 | | 5,212 | 99.3 |
| 저소득 주민 생 활 안 정 기 금 관 리 | 580,302 | 53,099 | | 527,203 | 9.1 |
|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| 2,263,481 | 14,213 | | 2,249,268 | 0.6 |
|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| 1,847,522 | 385,863 | | 1,461,659 | 20.8 |
|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운 용 | 2,094,483 | 13,775 | | 2,080,708 | 0.6 |
| 화력 발전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| 1,308,274 | 933,587 | 110,000 | 264,687 | 71.3 |
| 수 질 개 선 사 업 | 527,932 | 2,652 | 525,280 | | 0.5 |

○ 예비비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산현액 | 지 출 액 | 불 용 액 | 지출비율(%)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일반회계 | 1,326,900 | 530,348 | 796,552 | 39.9 |

□ 검토의견

-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으로
- 2004. 5. 12 - 2004. 5. 31(20일간)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, 재무회계규칙,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지침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사항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 또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, 수범사례 1건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여 고질채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<일반회계>

-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
 - 총 세입은 예산현액 408,379,120천원 대비 99.9%인 408,157,581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402,234,852천원을 수납하여 98.5%의 양호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, 전년도 수납액 305,819,237천원 대비 현년도는 131.5%의 수납실적을 거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된다 하겠음.
 - 그러나 세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나 전년도의 5,154,066천원의 미수납액이 현년도에는 결손처분액 562,282천원을 제외하고 5,360,446천원으로써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채납처분과 결손처분 등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, 특히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2003회계연도중 결손처분액이 562,282천원으로써 전체 미수납액 5,922,728천원의 9.5%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세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불필요한 미수액을 제거하고 채납관리에도 효율화를 기하여 징수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 이는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수입 징수 비율이 15.0%로 저조하여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부실채권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입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많다고 보는 것임.
 - 세외수입의 수납은 징수결정액의 97.7%를 수납하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중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, 도로사용료 수입은 채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으므로 담당부서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당해연도 징수를 목표로 본연의 업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.

○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

- 총 예산현액 408,379,120천원중 60.9%인 249,002,237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5,808,418천원이며, 집행잔액이 13,568,465천원으로써 전년도의 60.8%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재정운용면에서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투자비중이 높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
- 집행잔액 13,568,465천원은 전년도 불용액 14,528,400천원보다 6.6%가 줄어 건전재정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.
- 다만 예비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6,151,000천원중 위험구조물 철거사업외 7건 1,326,9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건을 제외한 총 7건에 530,348천원만 지출하였으며, 796,552천원은 불용처리되어 집행비율이 39.9%에 불과하였는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제 14호 태풍 “매미”피해 사유시설복구비 미집행이 767,886천원으로써 불용액의 96.4%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예비비 사용요구는 사용해야할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 요구하여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.
-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
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경우 원인별 내역 중 불용액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잔액이 4,112,832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사업 타당성 검토결여 및 업무추진 소홀과 집행의지 부족등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요망되고 있음.

〈특별회계〉

-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30,294,38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9,514,293천원의 수납(수납율 97.4%)으로 전년도(97.7%)와 비슷한 수준이며 상·하수도사업, 주택사업 등 11개 전분야의 수납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이는 특별회계상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의한 수익자 비용의 부담임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건전한 세무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, 해당 부서의 노력도 크다 하겠음.

- 특별회계 중 징수율이 다소 낮은 주택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독려하여 체납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부담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.
-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,118,870천원 대비 15,355,647천원(집행율 54.6%)을 지출하였으며, 전년도에는 예산현액 29,371,532천원 대비 66.8%(집행율)에 해당하는 19,647,696천원을 지출하여 2003회계연도중 지출은 전년도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
- 집행율이 낮은 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(9.1%), 토지구획정리사업(0.6%), 농공지구 조성사업(20.8%),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(0.6%) 등 4개 특별회계는 극히 미진하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68.6%에 해당하는 6,318,838천원으로써 이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있으므로 사업집행율이 저조한 4개 특별회계관리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음.

□ 참고사항

[관련법규]

- 지방자치법 제125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(세입·세출결산의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에는 세입·세출결산보고서, 계속비결산보고서, 지방자치단체의 채권·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

-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 ①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- ②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